

# 大法院 判例를 통해 본

##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 ....○ <編輯者 註>.....○

### ◎ 第 19 回

<前號에서 계속>

### 著名商標

區分 事件 및 日字	請求趣旨	名稱	審決 또는 判決	適用法條文 (審決·判決理由)
73審判 136 (73. 6. 7)	商標登錄 第28005號 는 無效다	第45類 兒童服 內服 洋服	成 立 (73.11.2)	舊商標法 第5條 1項 8號(著名한 商標와 類 似하여 無 效다)
73抗告(당) 375 (73. 12. 3)	無效가 아니다		不 成 立 (73.11.8)	原審維持
74후 67 (74.12.11)	無效가 아니다		棄 却 (76.2.24)	原審維持 (無效)

原審決에 適示된 美國의 雜誌와 新聞에 各 掲載되어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 있었고 世界 最大의 石油會社의 商標인 事實을 認定한 後 本件 商標가 引用商標와 同一하다고 할 程度로 類似하니 本件 商標을 使用하면 一般需要者는 마치 引用商標權者가 그 商品을 生産한 것 같이 誤認混同할 憂慮가 있다는 趣旨로 判斷하여 本件 商標는 舊商標法 第5條 1項 8號에 該當하므로 同法 24條의 規程에 依하여 그 登錄을 無效로 하여야 할 것이 라는 趣旨로 判斷하고 있는 바 原審이 위 認定事實과 判斷을 記錄에 나타난 證據資料에 對比하여 檢討하니 本件 商標는 引用商標와 同種 商品에 使用하는 것도 아니고 本件 商標가 먼저 登錄된 商標라 하더라도 위 原審의 判斷대로 舊商標法 第5條 1項 8號에 該當한다 할 것이니 原審의 措置는 適法하여 所論 商品 類別主義와 先原主義 等に 關한 法令에 違背됨이 없다.

引用商標가 우리 나라를 위시한 全世界의 으로 著名한 商標로 認定한 原審의 措置는 適法하다.

本願商標 :

**EXON**

(登錄 28005號)

引用商標 :

**EXXON**

(登錄 出願 號)

### ● 判決內容

原審이 그 적시한 證據資料에 의하여 本件 商標의 出願前에 審判請求人의 商標(引用商標)에 關한 記事가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 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80후 1	80. 3. 11 (棄 却)	(第11類) 月經帶, 月 經帶用綿具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8號 및 11號
78抗告(결) 470 (77-5039)	79. 11. 30 (不成立)		<稱號, 外觀, 觀念類似 商 品の 誤認混 同>

本願商標：  오비이 o b e  (出願 77-5039)	引用商標：  “OB”
---	-------------------

本件商標：  AMORE 아모레  (登錄 36098)	(가)號商標：  Amorex 아모렉스
---	-------------------------------

● 判決內容

本件 兩商標를 對比하여 呼稱上 本願商標는 3音節, 引用商標는 2音節의 差異는 있으나 第1音과 第2音이 同一하되 前者(本願商標)의 第3音인 “이”는 第2音을 길게 발음할 때 通例의으로 나오는 音이므로 양자는 “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 확연히 識別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양자는 指定商品이 다르므로 商品出處의 誤認混同 念慮의 與否에 對하여는 引用商標(後者)가 國內著名商標로 認定되는 것이 去來社會의 通念上 妥當하다고 한 後 그러므로 指定商品이 비록 다르다 하여도 現代企業이 여러가지 商品을 生産하는 事態에 있어서 一般需要者는 마치 引用商標權者가 그 商品을 生産한 것 같이 認識할 것이므로 誤認混同을 免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商標使用에 關한 당사자 사이의 合意覺書에 對하여 이는 당사자 內部問題이지 이로써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10號의 適用을 排除할 수 없다고 判示한 原審決의 위와 같은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審理未盡·理由不備·判斷遺脫의 위법이 없다.

同一類似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別)
78후 10	78. 9. 12 (棄却)	(第10類) 화학 의학 및 약제의 조제품	舊商標法 第5條 第1項 第11號
76抗告(당) 413	78. 5. 31 (不成立)		(舊商標法 第25條 第1項)
75審判 471	76. 9. 30 (成立)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유사한  유사商標의 判斷)
登錄 第36098에 대한 權利範圍	가호는 本件 商標의 權利範圍에 屬한다.		

● 判決內容

第1點에 대하여

原審은 이 事件 登錄商標와 (가)號와 外觀을 대비하

면서 (가)號는 “AmoreX” “아모렉스” 또는 “Amorex”와 “아모렉스”가 결합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原審決에 의하여 明白한바 (가)號의 일부분을 적출하여 (가)호라고 단정하여 이것이 이 사건 登錄商標의 外觀이 類似하다고 실시한 趣旨가 아니니 原審決에는 審理未盡 採證法則 違背·其他 허물이 없다.

第2點에 대하여

原審은 이 事件 登錄商標와 (가)號 標章은 細密하게 節次를 따지고 觀察할 때는 서로 相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經驗則上 明白한 것처럼 일군의 文字를 全體로서 觀察하면 그 直觀的인상이 지극히 근사하다는 趣旨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判斷은 正當하다.

第3點에 대하여

設使 이 事件 第1審 審決에 論旨가 指摘하는 대목에 關한 허물이 있어서 審判請求人이 그 是正을 호소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原審審決에 의하면 이 點을 바로 잡아서 (가)號 原狀態에서 이 事件 登錄商標와 比較하고 있으므로 實質의으로는 審判請求人의 主張을 받아들여 審判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이 論旨도 理由없다.

第4點에 대하여

原審審決이 그 判示에서 (가)號 標章을 “AmreX”와 “아모렉스”가 결합된 狀態가 그 일부임을 前提로 한 趣旨는 分明하지 않으나 辯論의 全 趣旨에 비추어 볼 때 Amorex 라고 결합된 것을 前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不特定한 狀態의 (가)號를 審判對象으로 한 위법이나 請求趣旨에 벗어난 範圍에까지 들어가서 審理한 위법이 없다.

第5點에 대하여

原審이 「“Santa”와 “Fanta”는……外觀上 類似하다는 大法院 74후 41 判示와 같이……」라고 記載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가 있다하여 이것이 原審審決에 影響되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 上告는 理由없는 것이 되므로 棄却한다. (계속)